



## 화순 농소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3회)변경 승인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소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3회)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1. 03. 26.

화 순 군



1. 사업의 목적 : 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활력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
2. 사업내용 및 구역
  - 가. 사업명 : 농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 나. 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운농2리 농소마을 일원
  - 다. 주요사업
    - 지역경관개선 : 유희공간 조성, 쉼터공원 조성, 디자인골목 조성, 트레킹경관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제경비 등
  - 라. 면적 : 71.3ha(관리지역 65.6, 농림지역 5.7, 자연환경보전지역 -)
  - 마. 가구·인구 : 71호, 125명
3. 사업비 필요금액 : 466백만원(국비 70%, 군비 30%)
4.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
5. 사업의 효과

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 조성  
 나.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도모

6.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화순군수

나.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7. 세부사업계획(변경) : 관련서류 열람

화순군 건설과 농촌개발팀 ☎ 061-379-3773

○ 변경

토지세목(편입토지조서)

사업	위치	지번	지목	전체면적(m <sup>2</sup> )	소유 구분	토지이용규제사항	비고
				편입면적(m <sup>2</sup>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화순 농소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동면 운농리	1018 -8	대	85	기획재정부	유휴공간조성	
				85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화 순 군 수 

###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내용

저수지명	위치	규모				관리자	지정사유	비고
		수혜면적 (ha)	총저수량 (천m <sup>3</sup> )	제당높이 (m)	제당연장 (m)			
송암제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다산리 780번지 일원	13	100	12	72	화순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농신제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운농리 558번지 일원	6	20	11	46	화순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길성제	전라남도 화순군 백아면 길성리 734번지 일원	5	16	6	120	화순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구암제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 구암리 317번지 일원	7	24	10	70	화순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안성제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 안성리 178번지 일원	8	51	4.2	92	화순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저수지명	위치	규모				관리자	지정사유	비고
		수혜면적 (ha)	총저수량 (천m <sup>3</sup> )	제당높이 (m)	제당연장 (m)			
가봉제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가봉리 854번지 일원	7	3	7.6	76	화순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 2.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건설과)

##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사유

-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상류사면 국부적 토사유실, 댐마루 요철 및 침하, 하류사면 습윤 및 침투수 유출 등이 발견됨에 따라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붕괴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필요

##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서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21. 3. 25.

## 6. 문의처 : 화순군 건설과(061-379-3761)

##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31.

화 순 군 수



○ 도로명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178-15 외 17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부여 8건, 폐지 10건)			불		임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45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전라남도로부터 “한천~오음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3. 31.

화 순 군 수



- 사 업 명 : 한천~오음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 열람기간 : 2021. 3. 30. ~ 2021. 4. 14. (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화순군청 건설과(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현길 23), ☎ 061-379-3752
- 의견제출기간 : 2021. 3. 30. ~ 2021. 4. 14. (15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28-1번지 외 19필지(14,014㎡)
  - 토지소유자 : 박○우 외 9인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산1-17번지 비닐하우스 외 15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1. 3. 29.

화 순 군 수



### ▣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연 장 기 간	3개월(2.25.국세청이 발표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범위와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12월 말 결산법인 : 4월 말까지 → 7월 말까지

- 기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061-379-3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변경)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 03. 26.

화 순 군 수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일 : 2021. 03. 26.

2. 하수처리구역(위치) 및 처리면적, 시설용량, 처리방법

시설명	처 리 구 역(위치)		처리면적 (km <sup>2</sup> )	시설용량	처리방법	비고
보월	화순군 이서면	보월·영평	0.167	60m <sup>3</sup> /일	SNR공법	

3.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장소 : 화순군 이서면 보월리 180-8

4. 처리방식 : SNR 공법

5. 계획수질

시설명	구 분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개/ml)
보월	법적기준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방류수질	4.0	8.0	3.0	12.0	1.2	30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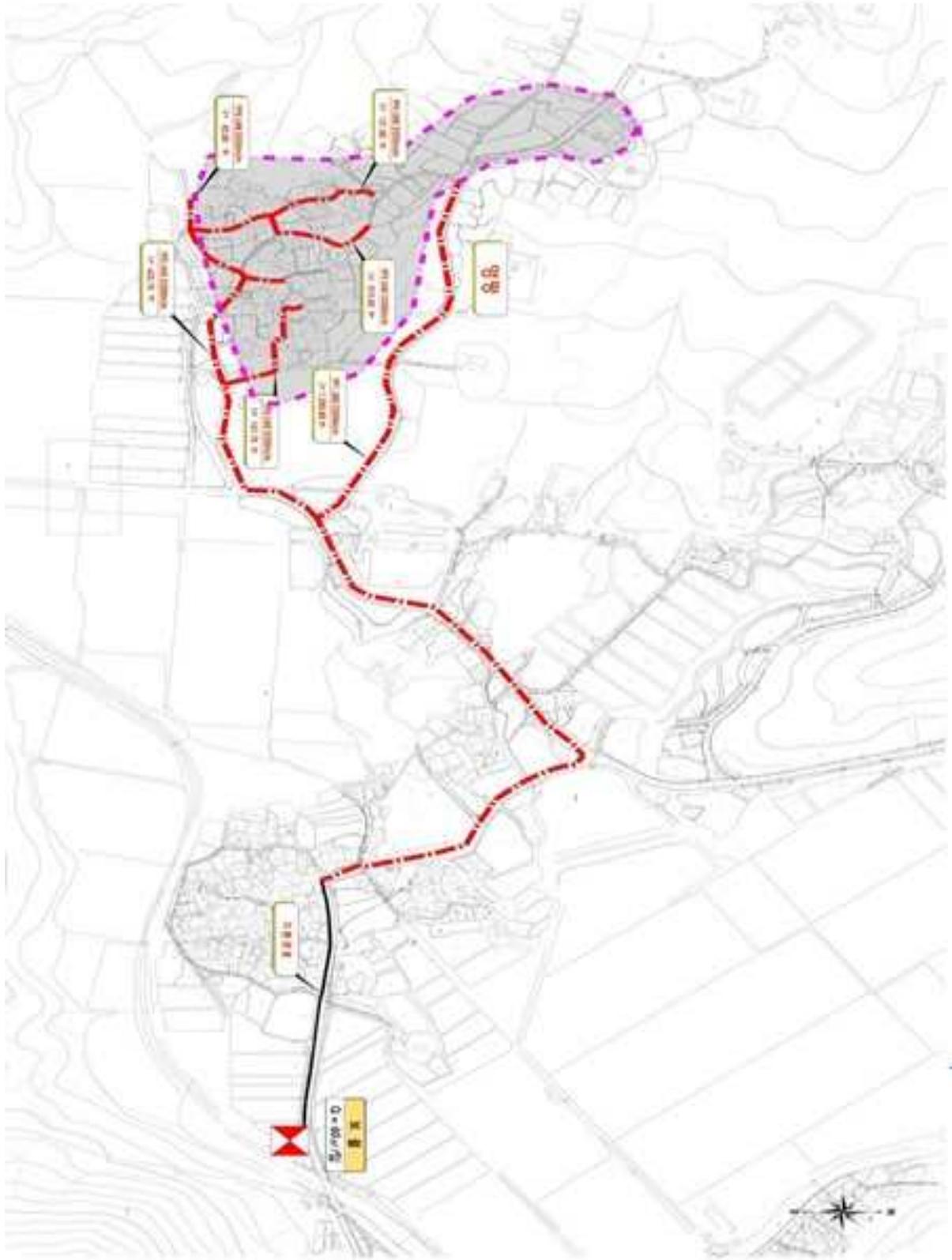
6. 공고기간 : 2021. 03. 26. ~ 2021. 04. 17. (20일간)

7. 공람장소 : 하수처리구역(도면)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  
되어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061-379-3872)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공공하수처리 구역도 1부. 끝.

#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도



## 공 시 송 달 공 고 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로 「석정지구」, 「용두지구」, 「풍암지구」, 「한지지구」, 「오동2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알림,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3. 29.

화 순 군



1. 공 고 대 상 : 토지소유자 45명 (붙임 참조)
2. 공 고 기 간 : 2021. 3. 29. ~ 2021. 4. 12. (15일간)
3.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 타 사 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및 지적재조사사업무규정 제8조에 의거 동의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1-379-3451, 34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조서 1부. 끝.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3. 29.

화 순 군 수



1. 공 고 대 상 : 주·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 별첨
  2. 공 고 기 한(의견제출기한) : 2021. 3. 29. ~ 2021. 4. 23.(25일)
  3. 의 견 제 출 처 :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061-379-3785)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자문서포함), 구두진술(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5. 기타 안내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되므로,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 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이 여러가지인 경우라도 사전 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미성년자

※ 의견 제시 기한 내 자진 납부코자 하는 경우와 기타 의문 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061-379-37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 반송이력 1부.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위반에 따른 우편물(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고지서)을 해당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장기방치, 반송투함,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3. 31.

화 순 군 수



1.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서○○(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등 135건(별첨 참조)
3. 공고기간: 2021. 3. 31. ~ 4. 15.(15일간)
4. 문 의 처: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061-379-3463)
5. 안내사항
  - 가. 현재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하시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소유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증명서, 폐차증명서 등)를 화순군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061-379-3463, FAX 061-379-38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대장상 소유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6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03. 30. ~ 2021. 04. 15.(15일간)
3.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061-379-3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1. 03. 30.

화 순 군 수

